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노부모부양 구비서류 안내

■ 구비서류[서류제출 기간 : 2022.03.05.(토) ~ 2022.03.11.(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 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분 불가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을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비속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추가 서류(해당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	
부적격통보를받은 자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입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대리인신청 시	인감증명서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분 불가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	•[당사 양식]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점자(적격 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